인쇄하기

인쇄하기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 례

[시행 2020.05.15.]

제정 1995.02.21 조례제1308호

개정 1995.06.29 조례제1324호

1996.12.26 조례제1399호

1999.05.06 조례제1476호

2000.12.15 조례제1548호

2001.08.16 조례제1572호(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조례)

2002.12.16 조례제1616호

2003.07.16 조례제1635호(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

2005.07.25 조례제1696호

(일부개정) 2006.01.12 조례 제1711호

(일부개정) 2010.06.07 조례 제1875호

(일부개정) 2011.03.14 조례 제1893호

(일부개정) 2017.01.09 조례 제2215호

(일부개정) 2019.04.08 조례 제2341호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351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9.10 조례 제2369호

(일부개정) 2020.05.15 조례 제2424호

관리책임부서 : 의료지원과

연락처: 063-350-2735

제1장 수 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보건의료원 (이하 "의 료워" 이라 한다)과 면 보건지소(이하 "보건지소" 라 한다)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사용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해당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0.6.7.>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0.6.7.>

제5조(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수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0.6.7.>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수가) 의치·보철·의수족·보조기·성형수술·예방접종·건강진단·치석제거·만성 알콜중독증 초음파·영양수액제 등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상 비급여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120퍼센트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0.6.7.>

제8조(제증명받급수수료) ①의료원에서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진단 등 제증명발급과 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검진·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9조(검사·시험 의뢰) ①의료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을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 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3" 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제3호" 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 ③관계공무원이 검사 또는 시험 등을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의 여비는 "장수군여비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성적서 교부) ①제9조제2항에 의거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시험성적이 확정되면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정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의료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의료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 ①진료비·수수료 등은 당일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③진료비를 카드로 결재할 때에는 카드사용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진료비로 본다. <신설 2010.6.7.>

제2장 구급차 운영

제15조(배차신청) ①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해 배차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인근거리 환자의 소송을 위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통보로써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②공휴일 및 일과후 구급차량 운행은 제1항의 배차승인 절차로 당직반장 책임하에 운행한다.

제16조(사용료 징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차신청서 사용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 기준등)에 의한 구급차량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간에는 원무팀 수납담당자이 야간(공휴일포함)에는 당직반장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6., 2000.12.15., 2003.7.16., 2005.7.25. 2019.4.8.> ②당직반장은 야간에 징수한 사용료를 익일 근무시간 개시 전까지 원무팀 수납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5.6., 2003.7.16., 2005.7.25.2019.4.8.>

제17조(운행허가서 발급) 의료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운행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배차순위) ①배차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환자 수송
-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간호사 수송
- 3. 외부 검진을 요하는 경우
-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구급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운영일지) 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①운전원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차량운행허가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운행사항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구급차량 운행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행방통제) 구급차량 사용자는 구급차량운행허가서를 반드시 운전자에게 전달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시 담당자에게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구급차운영 이외의 사항은 장수군차량집중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기 타

제23조(진료비·사용료·수수료 감면 및 지원 등) ①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법정감염병환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7.1.9, 2019.7.1.>

1.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5.7.25.>

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독거노인
- 다.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 라.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 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해당된자 <신설 2002.12.16.>
- 바. 기타 보건의료원장이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삭제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은 예산을 확보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외 래진료 및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에 한한다. <신설 2002.12.16.>, <개정2020.5.15.>
- 1. 만 65세 이상 주민
- 2.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 <신설 2011.3.14., 2017.1.19.>
- ③ 별표 4에 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포진(1회에 한함)·인플루엔자(매년 1회) 예방접종 백신비를 감면한다.<신설 2019.9.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1983.12.27 조례제77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5.06.29 조례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26 조례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5 조례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8.16 조례제1572호)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부칙(2002.12.16 조례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개정규정은 2003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5 조례1696호)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진료를 받은 진료수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01.12 조례제171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06.07 조례1875호> 부칙(2011. 03.14 조례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호, 20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호, 201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51호, 2019.7.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수군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69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24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상포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면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예방접종명	감 면 대 상 자	감 면 내 용	นไ ¬
	장수군에 주소를 둔	<u>चिर्</u> पा ठ	비고
대상포진	만50세 이상 군민 중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수군에 주소를 둔	예방접종 백신비의 50%	
	60세 이상 군민	감면	
인플루엔자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59세 군민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본인)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 64세 군민		

부서: 의료지원과 정책: 군민건강증진(보건/보건의료) 단위: 질병예방활동강화

(단위:천원)

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경정액)		전년도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휴수당 8,350원*4시간*3명*13일	(1,303)	(0)	(1,30
- 보험료	(700)	(0)	(70
201 일반운영비		1,734		1,000		73
01 사무관리비		1,734		1,000		73
본예산		1,000		1,000		9
○예방접종 홍보물품 구입 등		1,000				
추경3회	(1,734)	(1,000)	(73
○예방접종비 카드 수수료	(734)	(0)	(73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7,600원*1,500명*1.3%	(149)	(0)	(14
-대상포진 유료접종 45,000원*1,000명*1.3%	(585)	(0)	(58
307 민간이전		235,450		36,250		199,20
01 의료및구료비		235,450		36,250		199,20
본예산		245,450		36,250		209,20
○예방접종사업 소모품 구입		2,5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32,250				
- 유료 7,500원*3,700명		27,750				
- 무료 7,500원 * 600명		4,500				
○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유료) 5,000원*140명		700				
○대상포진예방접종약품구입(무료) 120,000원*4,000명*50%*83.333%		200,000				
○폐렴구균예방접종약품구입(무료) 40,000원*300명*83.33%		10,000				
추경2회	(235,450)	(245,450)	(△10,00
○폐렴구균예방접종약품구입(무료)	(0)	(10,000)	(△10,00
405 자산취득비		1,750		0		1,75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50		0		1,75
추경2회	(1,750)	(0)	(1,75
○카드단말기 구입 250,000원*7개	(1,750)	(0)	(1,75
국가예방접종 실시		275,020		242,820		32,20
	기	137,510				
	도	41,253				
307 민간이전	군	96,257 275,020		242,820		32,20
307 된단이전	ור			242,020		32,20
	기	137,510				
	도	41,253				
	군	96,257				

부서: 의료지원과 정책: 군민건강증진(보건/보건의료) 단위: 질병예방활동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경정액)	전년도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본예산	1,560	1,500	60
○쯔쯔가무시증 자체홍보 여비			
130,000원*12개월	1,560		
추경2회	1,248)	(1,560)	(△31
○쯔쯔가무시증 자체홍보 여비 104,000원*12개월	(1,248)	(1,560)	(△31
추경3회	(833)	(1,248)	(△41
○쯔쯔가무시증 자체홍보 여비			
83,240원*10개월	(833)	(1,248)	(△41
307 민간이전	6,000	6,000	
01 의료및구료비	6,000	6,000	
본예산	6,000	6,000	
○쯔쯔가무시증 예방물품(기피제) 3,000원*2,000개	6,000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0	10,000	△10,00
201 일반운영비	0	7,000	△7,00
03 행사운영비	0	7,000	△7,00
본예산	0	7,000	△7,00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	0		
202 여비	0	1,000	△1,00
01 국내여비	0	1,000	△1,00
본예산	0	1,000	△1,00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업무추진	0		
301 일반보전금	0	2,000	△2,00
09 행사실비지원금	0	2,000	△2,00
본예산	0	2,000	△2,00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	0		
계방접종 관리	311,215	246,450	64,76
201 일반운영비	1,500	1,000	50
01 사무관리비	1,500	1,000	50
본예산	1,500	1,000	50
○예방접종 홍보물품 구입 등	1,500		
307 민간이전	300,615	245,450	55,16
01 의료및구료비	300,615	245,450	55,10
본예산	342,840	245,450	97,39
○예방접종사업 소모품 구입	2,500		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29,640		
- 유료 7,600원 ★3,300명	25,080		

부서: 의료지원과 정책: 군민건강증진(보건/보건의료) 단위: 질병예방활동강화



(단위:천원)

보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경정액)	전년도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무료 7,600원 ★ 600명		4,560		
○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유료) 5,000원*140명		700		
○대상포진예방접종약품구입(무료) 75,000원*4,000명		300,000		
○폐렴구균예방접종약품구입(무료) 40,000원*300명*83.33%		10,000		
추경3회	(300,615)	(342,840)	(△42,22
○대상포진예방접종약품구입(무료) 75,000원*3,437명	(257,775)	(300,000)	(△42,22
405 자산취득비		9,100	0	9,1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9,100	0	9,10
본예산		9,100	0	9,10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 9,100,000*1대		9,100		
국가예방접종 실시		342,414	273,740	68,67
	기	171,207		
	도	51,362		
207 [17]	군	119,845	070 740	68,67
307 민간이전	ור	342,414	273,740	00,0/
	기	171,207		
	도 군	51,362		
Tot. 013.013.3111	프	119,845	070.740	00.0
01 의료및구료비	٦.	342,414	273,740	68,6
	기	171,207		
	도	51,362		
 본예산	군	119,845 275,020	273,740	1,28
는데 전	וכ	137,510	2/3,/40	1,20
	도	41,253		
	군	96,257		
│ │ │ ○어린이 예방접종	***	93,280		
	기	46,640		
	도	13,992		
	군	32,648		
○성인예방접종		152,520		
	기	76,260		
	도	22,878		
	군	53,382		